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<b>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</b>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**1.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[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[ ]여, [ ]부]**

① 차량 번호	② 차종	③ 임차 여부	④ 보험 가입 여부	⑤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	⑥ 운행 기록 작성 여부	⑦ 총 주행 거리 (km)	⑧ 업무용 사용거리 (km)	⑨ 무 사용비율 (⑧/⑦)	⑩ 취득가액 (취득일, 임차기간)	⑪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	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								
											⑬ 감가 상각비	⑭ 임차 료 ⑮ 감가 상각비 상당액	⑯ 유류비	⑰ 보험료	⑱ 수선비	⑲ 자동차세	⑳ 기타	㉑ 합계		
									(. . . ~ . . .)											
									(. . . ~ . . .)											
									(. . . ~ . . .)											
									(. . . ~ . . .)											
									(. . . ~ . . .)											
									(. . . ~ . . .)											
㉒ 합계																				

**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**

㉓ 차량 번호	㉔ 업무사용금액			㉕ 업무외사용금액			㉖ 감가상각비 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㉗ 손금불산입 합계 (㉓+㉖)	㉘ 손금산입 합계 (㉓-㉖)
	㉙ 감가상각비 (상당액) [(㉓또는㉕)×㉑]	㉚ 관련비용 [(㉓-㉑ 또는 ㉓-㉕)×㉑]	㉛ 합계 (㉙+㉚)	㉜ 감가상각비 (상당액) (㉓-㉙ 또는 ㉓-㉕)	㉝ 관련비용 [(㉓-㉑ 또는 ㉓-㉕)-㉚]	㉞ 합계 (㉜+㉝)			
㉙ 합계									

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③⑥ 차량번호	③⑦ 차종	③⑧ 취득일 (임차기간)	③⑨ 전기이월액	④⑩ 당기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	④①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누계	④② 손금추인(산입)액	④③ 차기이월액 (④①-④②)
④④ 합계							

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

④⑤ 차량번호	④⑥ 양도가액	④⑦ 세무상 장부가액				⑤② 처분손실 (④⑥-⑤①)<0)	⑤③ 당기손금산입액	⑤④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(⑤②-⑤③)
		④⑧ 취득가액	④⑨ 감가상각비 누계액	⑤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(=④③)	⑤① 합계 (④⑧-④⑨+⑤①)			
⑤⑤ 합계								

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

⑤⑥ 차량번호	⑤⑦ 차종	⑤⑧ 처분일	⑤⑨ 전기이월액	⑥⑩ 손금산입액	⑥① 차기이월액 (⑤⑨-⑥⑩)
⑥② 합계					

**작성 방법**

**1.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**

가. "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" 여부란: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"여"에 체크합니다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).

1)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% 초과할 것, 2)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·이자·배당 소득의 합계가 50% 이상일 것, 3)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

나. 차량번호란(①):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.

다. 차종란(②):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.

라. 임차여부란(③):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여부(자가, 렌트, 리스)를 적습니다.

마. 보험가입여부란(④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
바. 전용번호판부착여부란(⑤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
사. 운행기록작성여부란(⑥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 여부를 적습니다. (기재형식 : 여 또는 부)

아. 총주행거리란(⑦):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
자. 업무용사용거리란(⑧)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·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.

차. 업무사용비율란(⑨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,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적습니다.

1)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,500만원[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(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. 이하 같음]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00

2)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1,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

\*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(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)하는 경우 1,500만원 ×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타.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(⑩):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(임차)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(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)을 적습니다.

카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(⑫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
**2.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**

가. 업무사용금액란(㉔)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나. 업무외사용금액란(㉕)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란(㉚):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(상당액)이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\*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(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)하는 경우 800만원 ×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**3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금액 명세**

가. 전기이월액란(㉞)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
나. 감가상각비(상당액) 한도초과액 누계란(㉟): ㉞의 금액과 ㉟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손금추인(산입)액란(㉡)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(상당액)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(산입) 합니다.

**4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**

가. 감가상각비 누계액란(㉡): 「법인세법」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.

나. 처분손실란(㉢):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
다. 당기손금산입액란(㉣): ㉢의 금액이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.

\*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

라.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란(㉤): ㉢의 금액이 ㉣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**5.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**

가. 전기이월액란(㉧):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.

나. 손금산입액란(㉨):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)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.

\*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× 해당 사업연도 월수/12를 초과하는 금액